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 건 2021마5663 회생

재 항 고 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 심 결 정 부산고등법원 2021. 3. 30.자 (창원)2021라1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

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 신청외인 등의 신청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이던 보조참가인이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13.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노정희